## 라. 공공저작권 사용료 분배규정

제정 2013. 9. 23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개정 2015. 3. 문화체육관광부 승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문화정보원(이하"정보원"이라 한다)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한 대가로 징수한 사용료(이하"사용료"라 한다)의 분배방법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분배대상자) 공공저작권의 사용료 분배는 정보원에 저작권을 위탁한 자 (이하"위탁자"라 한다)를 그 대상자로 한다.

제3조(사용료 분배) ① 사용료의 분배는 이용자가 제출한 사용료 정산 내역서, 그 밖에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에 기초하여 분배한다.

- ② 정보원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총 사용료에서 「공공저작권 관리수수료 규정」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분배금으로 지급한다.
- ③ 정보원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.
  - 1. 분배대상 사용료 : 전년도 1~12월까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
  - 2. 분배시기 : 익년도 2월 말
- ④ 개별 위탁자에게 분배할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이월할 수 있으며, 이월 금액에 대하여는 차기 분배금에 가산한다 ⑤ 그 밖에 사용료 분배와 관련한 사항은 정보원과 위탁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.

제4조(이의 신청) ① 위탁자는 공공저작물 사용료 분배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, 그 신탁저작권이 이용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공공저작권운영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규정 개정)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제6조(지침)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업무규정」에 따른 공공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